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9가단5105675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2. [redacted]국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2.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redacted]도는 183,44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3. 14. 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3. 19. 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redacted]국은 8,920,730원 및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redacted]공단으로부터 2013. 6. 24.경 [redacted]시 B 공장용지 5,400㎡(C,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4. 4. 30.경 위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과세물건 | 연도 | 감면받은 세액 |
|---|---|---|
| 이 사건 토지 | 2013 | 61,302,770원 |
| 이 사건 건물 | 2014 | 54,872,730원 |

다. 그 후 원고는 사업경영상의 목적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을 분리하기로 하고 2014. 6. 25.경 원고가 유통업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제조업을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각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분할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으로부터 그 주식을 대가를 받고 2014. 7. 10.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대하여 [redacted]시장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192,369,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이 사건 토지 | 90,556,440원 | 7,829,580원 | 3,914,780원 | 102,300,800원 |
| 이 사건 건물 | 81,057,990원 | 4,004,760원 | 5,005,950원 | 90,068,700원 |

바. 원고는 2017. 1. 31. 위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와 D로 분할되고,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redacted]도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중 도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83,44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redacted]국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합계 8,920,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법인분할을 추징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A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 승계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이나 권리 등을 양도하는 특정승계를 의미하는 '매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A으로부터 그 주식을 대가로 교부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그 권리 등을 이전하는 '증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법인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하는 사유로서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점에 관하여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redacted]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별지]**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19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끝.